

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, 현장 수요에 맞게 쓸 수 있도록 바꾼다.

- 냉·난방기 임대 등 온열·한랭 질환 예방 품목도 사용 가능토록 규정 명확화
- 노·사 발굴 품목(10 → 15%),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한도(10 → 20%) 확대

고용노동부(장관 김문수)는 1월 21일 「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」(고용노동부 고시)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.

* (행정예고) '25. 1. 21. ~ 2. 7. (시행일) '25. 2. 12.

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발주자가 도급인(시공사)에게 별도 지급하는 비용으로, 안전관리자 인건비, 안전모 등 개인 보호구, 난간 등 안전시설,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·임대 등에 사용할 수 있다.

이번 고시 개정은 건설현장의 실제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여, 보다 유연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.

첫째, 노·사가 위험성평가 등을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품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한도를 10%에서 15%로 확대한다. 이를 통해 노·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발굴·개선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건설현장에 정착시킨다.

둘째, 간이 휴게시설, 냉·난방기 임대 등 온열·한랭 질환 예방품목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. 또한, 생수 등 음료, 간이 휴게시설에 비치하는 의자 등 소모성 물품도 노·사 자율 발굴 항목을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바꾼다.

셋째, 스마트 안전장비의 구입·임대 비용 한도를 10%에서 20%로 확대한다. 건설현장에 인공지능(AI) CCTV, 스마트 추락 보호 에어백 등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을 확산시켜, 보다 효율적으로 위험요인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.

이외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입할 수 있는 근로자 보호구 대폭 확대, 산재예방 목적의 모든 교육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허용 등을 담고 있다.

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“이번 고시 개정이 건설현장 상황에 맞게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도록 개선됨에 따라,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.”라고 강조했다.

☞ 일부개정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입법·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

붙임1: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요

붙임2: 「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」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

담당 부서	산재예방감독정책관 건설산재예방정책과	책임자	과장	이경제 (044-202-8935)
		담당자	사무관 전문위원	권오준 (044-202-8938) 류채은 (044-202-8942)



□ 개 요

- (개 념)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건설공사 발주자가 공사금액에 계상하여 시공자에게 지급하는 비용
- (적용범위)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 건설공사
- (계상기준) 예정가격* 작성 시 건설공사 발주자가 공사종류 및 금액에 따라 대상액(재료비+직접노무비)의 2~3% 내외로 계상

* 저가낙찰에 따른 산재 위험을 고려, 낙찰가에서 예정가격으로 변경('19년 이후)

□ 관리 및 제재

- (관 리) 건설공사 도급인은 매월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(공사종료 후 1년간 보존), 6개월마다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
 - * 건설공사도급인은 관계수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음
- 발주자는 목적 외 사용하거나 미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
- (제 재) 미계상 및 부족계상(발주자), 목적 외 사용 및 사용내역서 미작성·미보존(도급인) 시 1,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□ 사용기준

- 안전관리자·보건관리자 임금, 안전시설비, 안전인증 보호구, 안전보건 진단비, 안전보건 교육비, 근로자 건강재해 예방비 등 사용
- 원칙적으로 근로자 안전보건 확보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
 - 공사도급내역서에 반영되어 있거나, 他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항목은 사용 불가

① 노·사 발골 항목 사용한도 확대(안 제7조제1항)

- 노·사가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발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산안비 한도를 10 → 15%로 확대
-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가 없는 중소기업 현장은 사용기준이 부재하였으나, 관련 근거 마련

② 건설현장의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활성화(안 제7조제1항)

-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·임대 비용의 산안비 사용한도를 10→20%로 확대

③ 온열·한랭질환 예방 품목을 제한 없이 사용토록 허용(안 제7조제1항)

- 간이 휴게시설, 냉난방기 임대 등 품목은 기간에 관계없이 산안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
- 생수 등 음료, 간이 휴게시설에 비치하는 의자 등의 소모성 물품도 노·사 자율 발골 항목으로 사용 가능

④ 다양한 작업에 따른 보호구 선택폭 확대(안 제7조제1항)

- 산안법 제89조 및 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에 따른 자율안전 확인 대상 보호구(안전모, 보안경, 보안면)도 사용 가능 품목에 추가

⑤ 기타 조문 정비 등(안 제7조제1항)

- (안전관리자 임금) 안전관리자 임금을 지방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부터 인정하는 것으로 명확화
- (교육비용 인정범위) 산업재해 예방이 주된 목적인 교육 모두 소요 비용 인정